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합5866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, 공지윤

변 론 종 결 2021. 3. 25.

판 결 선 고 2021. 5. 13.

주 문

1.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5. 10. 8. 체결된 우선수익권 부여 약정을 2,554,704,1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2,273,630,136원, 원고 B에게 281,073,9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의 사업 진행 및 피고의 투자

1)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은 서울 동대문구 E 대 1,719.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'F'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분양하는 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을 진행하였다.

2) 피고는 2015. 1. 12. D과 사이에,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3,000,000,000원을 투자하여 2015. 7. 20.까지 투자원금 3,000,000,000원을, 2015. 10. 20.까지 확정수익금 3,000,0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, D에게 3,0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

1) D은 2015. 9. 16. G 주식회사(이하 'G'이라 한다)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토지신탁계약'이라 한다).

○ 위탁자 겸 수익자(채무자) : D

○ 수탁자 : G

○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: H조합, I조합, J조합(이하 위 K조합들을 총칭할 경우 'H조합 등'이라 한다).

○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액 및 우선수익권금액 : H조합 950,000,000원 및 1,235,000,000원, I조합 3,600,000,000원 및 4,680,000,000원, J조합 2,000,000,000원 및 2,600,000,000원

2) D은 2015. 10. 8.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(우선수익권금액 6,500,000,000원)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(이하 '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3) D은 2016. 4. 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2015. 9. 16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,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다음 2017. 5. 23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5475호로 2017. 5. 23.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

1) D은 2017. 5. 22.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H조합 등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(이하 ‘이 사건 건물신탁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다음, 2017. 5. 23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, G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5478호로 2017. 5. 22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D은 2017. 5. 30.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변경계약(이하 ‘이 사건 건물신탁변경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라. 피고의 투자금 회수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신탁변경계약상의 우선수익권에 기하여 G으로부터 위 투자금 및 확정수익금 변제 조로 2018. 7. 19. 3,400,000,000원, 2018. 7. 31. 1,614,000,000원 합계 5,014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, 10, 11, 14, 15 내지 17, 21 내지 23호증, 을 제6 내지 9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D은 2015. 10. 8.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G과 사이에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 중 피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인 2,554,704,107원의 한도 내에서

취소되어야 하고(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), 원상회복(가액배상)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에 관한 직권판단

가.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로 지목된 재산처분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으로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.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).

나. 이 사건의 경우 D은 2015. 9. 16.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2015. 10. 8.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, 2016. 4. 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2015. 9. 16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,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2017. 5. 23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7. 5. 23.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신탁은 그에 기한 우선수익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2017. 5. 23. 종료되어 원고들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그대로 D에게 복귀하였으므로(피고가 G으로부터 투자금 및 확정수익금 변제 조로 지급받은 5,014,000,000원은 이 사건 토지신탁상의 우선수익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설정된 이 사건 건물신탁상의 우선수익권에 기한 것이다),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민성, 판사 정경희, 판사 송지현